

의안번호	39
발의일자	2022. 8. 12.
회부일자	2022. 8. 18.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2. 8. 25. (수)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 수 산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채 식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정근수 의원 외 31명

2. 제안이유

- 낚시 관리 및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정책 추진을 촉진하여 낚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낚시 관리, 낚시관련 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낚시 관리, 낚시관련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낚시환경지킴이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낚시 관리, 낚시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과 불법낚시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함(안 제7조)

4.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 예고기간 : 2022. 8. 18. ~ 8. 23.(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64호)
- 의견제출 : 없음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고 낙시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목적 및 정의(일부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낙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낙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시”란 낙싯대와 낙싯줄·낙싯바늘 등 도구(이하 “낙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낙시인”이란 낙시터에서 낙시를 하거나 낙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낙시터”란 낙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낙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낙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낙시인이 낙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낙시터업자”란 낙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낙시어선업”이란 낙시인을 낙시어선에 승선시켜 낙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낙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낙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낙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낙시어선업자”란 낙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입 법 사 례

조 례 명	비 고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2020.11.12. 제정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	2021.03.18. 제정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2021.12.10. 제정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2021.11.04. 일부개정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사업 등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유통·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부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에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낚시환경지킴이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낚시 명예감시원 세부활동(한국어촌어항공단, 2022)

구 분	세부활동(안)	
홍보	· 명예감시원 활동 목적 및 주요 임무 홍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안전관리 등 정책 홍보 · 캠페인용 포스터 리플릿 등 현장 배포게시	· 낚시전문교육(낚시터,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대상) 이수 방법 안내 · 유튜브,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 활용 등
내수면	· 해빙기 안전사고 예찰 · 휴무낚시터의 안전시설 점검 · 얼음낚시터 안전점검(현장계도) · 수상좌대 누전 우려 전기시설 계도 · 부양성, 복원성 저하 낚은 좌대 점검 · 유해물질 낚시도구 사용 감시 · 낚시터업 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설치 계도	· 사행행위, 금어기 위반 모니터링 · 낚시터 안전장비 설비 비치 점검 · 저수지 제방낚시 계도 · 유해어종 방류·방생 금지 계도 · 낚시터 밤낚시 텐트 질식사고 예찰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모니터링 · 장마철 낚시터 및 위험지역 안전계도 등
해수면	· 방파제 낚시터 안전사고 예찰 · 낚시어선 안전장비 비치 상태 점검 · 낚시어선 운항시간 점검 · 해수면 수상좌대 등 안전시설 점검 · 선상낚시 안전장구 미착용 계도	· 무허가, 보험 미가입 낚시어선 위반행위 점검 · 선상 음주 행위, 무신고 출항, 인원 초과 등 계도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모니터링 · 나홀로 갯바위, 방파제 낚시 계도 등

낙시 안전 지킴이(해양수산부 낙시진흥 기본계획 中, 2020)

- 민간의 자율적·주도적 노력을 통한 건전한 낙시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낙시 안전 지킴이 지정 및 운영('20~)
- 낙시인 등 민간이 참여하여 갯바위, 방파제 등 낙시터와 낙시어선에서 일어나는 안전관리, 환경오염 및 낙시정책 등 홍보·계몽
- 낙시 관련 홍보와 연계 및 낙시해(海) 앱을 활용한 실적 보고 추진

⇒ 해양수산부의 유사 정책으로 '낙시 안전 지킴이' 사업이 있으며 현재는 '낙시 명예감시원'으로 변경되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

○ 안 제7조는 건전한 낙시 문화 조성 및 산업육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다. 종합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 및 낙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낙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레저 활동으로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히 반도 지형과 저수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낙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낙시 활동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낙시문화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련 산업 지원 및 안전 문제 개선도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관련 정책 추진을 촉진하여 관련 문제를 개선해 나가며, 낚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1. 낚시의 특성

- **(대중성)** 낚시는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레저 활동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레저 선진국에서 폭넓은 시장을 형성
 - 특히, 해수면이나 내수면을 활용한 레저 활동 중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제약이 가장 적은 활동
- **(다양성)** 낚시를 접하기 좋은 환경을 보유(삼면이 바다)하고 있어 내수면과 바다(동·서·남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낚시 활동이 가능
 - 또한, 낚시가 이루어지는 대상지역과 사용도구 및 장소·수단에 따라 다채로운 형태의 낚시를 즐길 수 있음

【 낚시의 종류 】

대상지역	사용 도구	낚시 수단
바다낚시	민장대낚시, 릴낚시, 원투낚시	배(선상)낚시, 갯바위낚시, 방파제낚시
민물낚시	대낚시, 릴낚시, 루어낚시, 플라이낚시, 견지낚시	저수지낚시, 하천낚시, 얼음낚시, 보트낚시

- **(의존성)** 기상여건(날씨, 바람 등)과 환경변화(물 때, 수온, 수위변화 등)에 큰 영향을 받으며, 대상 어종에 따라 특화된 장비를 사용
 - 계절별 낚시어종이 다양하고 실내 및 얼음낚시터가 존재하여 4계절 다양한 낚시 활동이 가능(타 해양 스포츠 대비 계절성 적음)
 - 겨울철에도 볼락·우럭, 빙어·송어 등 주요 어종에 한해 꾸준히 낚시 가능
- **(수산자원 영향)** 내수면과 바다에서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활동으로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수산자원 고갈 우려
- **(안전사고)** 무리한 출조와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2.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현황

□ 낚시인구

- (현재) 낚시 선호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낚시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18년말 기준 낚시인구는 850만명으로 추정(연평균 3.9%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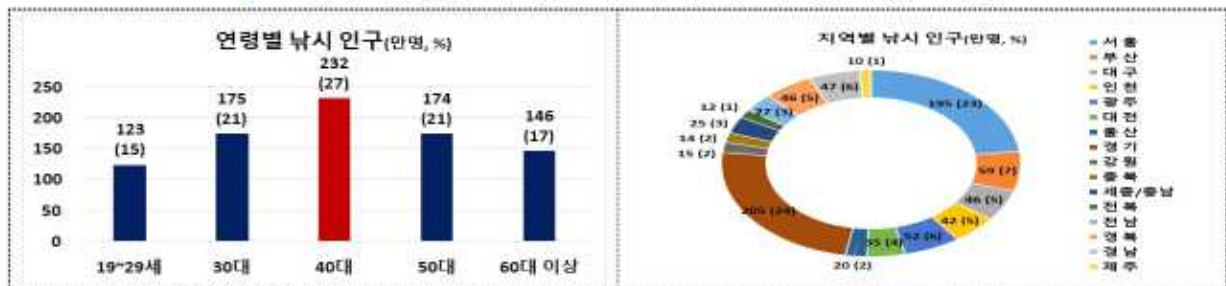
* 1년에 3회 이상 낚시 활동을 한 국민을 낚시인구로 가정

【 우리나라 낚시 인구 추이(만명,%) 】



- 또한, 전 연령이 골고루 낚시를 즐기고 있으며,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 지역에 낚시인구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

【 '18년 연령별/지역별 낚시 인구 추정(만명, %) 】



- (전망) 기존 낚시인구('00년~'18년)를 토대로 연평균 증가율(3.9%) 및 예측모형을 적용한 결과, '24년 낚시인구는 약 1,012만명으로 전망

【 낚시인구 전망(만명) 】



IV. 정책방향

비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낙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낙시산업'
----	---

기본방향

- ① 국민 모두가 가보고 싶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낙시 환경 실현
- ②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
- ③ 미래세대를 위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낙시 환경 조성

4대 전략	9개 추진과제
[기업] 활력 넘치는 낙시산업 육성	1. 낙시 관련 통계 기반 마련 2. 낙시 관련 산업 R&D 지원
[국민] 지속가능한 낙시문화 정착	3. 낙시교육 인프라 확보 4. 국민 대상 교육·체험 강화 5.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 오염 예방
[어촌] 행복한 낙시 공간 확충	6. 낙시 인프라 조성 7. 낙시 활동 활성화 지원
[낙시어업인] 안전한 낙시기반 조성	8. 낙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9. 낙시터 안전관리 강화

기 대 효 과	2020년 현재(AS-IS)		2024년 까지(TO-BE)
	❖ 낙시 안전사고 증가 ❖ 수산자원 남획 및 환경오염 우려 ❖ 낙시 인프라 및 공간 마련 미흡 ❖ 낙시용품 수출 부진 및 업체 영세화		❖ 낙시 안전문화 정착 ❖ 낙시 자원 관리 ❖ 지역경제 활성화 ❖ 낙시용품 수출 확대 및 규모화

낚시 산업 및 정책 추진 현황

□ 낚시산업 현황(출처 : '21년 낚시산업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연구)

- (낚시인구) '20년 620만명(추정)으로 '24년 1,012만명 전망
- (낚시산업) 매출액 기준 2조 7,389억원 추정('20.)
 - 낚시어선은 4,422척, 이용객은 528만명으로 증가 추세*('21)
 - * 낚시어선 이용객은 '20년(507만명) 대비 약 4%증가
 - 낚시터는 959개소(허가 568, 등록 391)로 경기·충북·충남이 63.6% 차지('21)
 - 낚시용품업은 제조업 1,740개, 유통업체(도소매) 1,852개 영업

□ 주요 성과

- (낚시제도) 낚시어선 영업제한 구역, 속력제한 등을 반영한 안전 운항규칙 표준안을 제정하여 지자체 고시에 반영
- (낚시산업) 낚시산업 실태조사 실시, 국산 낚시용품 생산업체에 대한 국제 낚시박람회 참가('21) 등 해외마케팅 계속 지원
- (낚시문화)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낚시 명예감시원 운영 등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추진
- (낚시안전) 낚시어선 구명조끼 등(燈) 부착,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낚시어선 안전수칙 방송 배포(이덕화氏 녹음), 낚시해(海) QR코드 스캔 기능 도입

⇒ 주요 낚시어선사고* 전년 대비 21% 감소(67건→53건), 사망사고 0건

*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등의 사고

□ 보완 사항

- 낚시산업 육성을 위해 낚시터업 활성화, 낚시 관리 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전체적인 사고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가 지속되어 안전대책 강화 필요

2022년 시행계획 추진 방향

비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과
어촌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낚시산업 육성

목표

낚시 안전사고 저감, 수산자원 및 환경 보호

낚시 산업 육성 및 낚시공간 확충

4대 전략

8개 추진 과제

활력 넘치는
낚시산업 육성

- ① 낚시 관련 통계 기반 마련
- ② 낚시 산업 마케팅 지원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

- ① 환경 오염 예방 및 낚시자원 관리
- ② 대국민 낚시 교육·홍보 실시

행복한
낚시 공간 확충

- ① 낚시터 활성화 지원
- ② 낚시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안전한 낚시기반 조성

- 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② 낚시터 안전관리 강화